

의료보험해설집 개정판(1989) 발행

1989. 7. 1일자로 개정된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을 토대로 치협에서 발행한 '89 치과의료보험 해설집 내용중 특히 참고 사항을 발췌 수록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험수가 개정요지 (1989. 7. 1일 개정)

1. 요양급여기준(보사부고시 89-30호 89. 6. 21)
 - 전액 본인부담 “치아결손보철”이 “비급여 대상”으로 개정
2.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보사부고시 89-31호 '89. 6. 21)
 - 의료보험수가 9% 인상
 - 평일 19시(토요일은 15시)-09시 및 공휴일 진료시 초·재진 진찰료가(가-1-가)의 50% 가산
 - 소아 가산 “만 6세 이하”에서 “만 8세 미만”으로 개정
 - 치과의원 가산율 “4%”에서 “7%”로 개정 (이때 종전 원미만 절사에서 원미만 “4사 5입”)
 - 근관확대 “1회”에서 “2회 이내” 산정토록 개정
 - 치주낭 측정검사 3분의 1약당 200원 신설
 - 주사(근육주사)시에 별도 산정하던 1회용 주사기 및 1회용 주사침 재료대가 포함되어 수가 책정됨 (“270원”에서 “370원”으로).
3. 의료보험 본인 부담 정액제 (보사부고시 89-32호 '89. 6. 21)
 - 정률 : 1일 진료비 10,000원 이상일 때-치과의원 본인부담 30%(종전과 동일)
 - 정액 : 1일 진료비 10,000원 미만일 때-초·재진 2,500원으로 변경 (단, 재진시 1일 총진료비가 2,500원 미만이면 해당 금액만 정수하고 진료

비 명세서에는 하단 여백에 진료일자, 처치내용, 본인부담금을 기재 청구)

4. 의료보험 재료대 협약가 변경
협약기간 : 1989. 7. 1~1990. 12. 31일까지 1년 6개월

도시지역 의료보험 실시에 따른 변경안내

1. 진료지역 확대(치과분야)
전국을 8개 대권으로 나누어 치과의원, 병원치과, 종합병원 치과, 3차 진료기간 치과에서 서울 거주 주민이 인천에 가서 진료를 받아도 타 진료권 진료확인서(7호 서식) 필요없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예시) 경인대권 : 서울, 경기, 인천, 제주 지역

p.846에 계속됩니다.

